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삼척시(건축과)	심의일자	2023. 12. 13. ~ 2023. 12. 19.
건축종별	[] 신축, [●] 증축, [] 대수선, [●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삼척시(전략사업과)		
대지현황	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		
	지번 162-3	관련지번 외 6필지	
	대지면적 8,402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계획관리지역, 자연취락지구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532㎡	건폐율 6.33%	층수 수련시설(지상2층) 야영장시설(지상1층)
	주용도 수련시설(야영장시설), 야영장시설(화장실, 샤워실)	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2동
	최고높이 수련시설(8m) 야영장시설(6m)	용적률 11%	연면적 합계 924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계획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삽입된 그림파일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어려우니, 해상도를 조절해 식별성을 높일 것 ○ 오타수정 : '캠퍼' ⇒ '캠프'(34쪽), '가로지는' ⇒ '가로지르는'(23쪽) ○ 평면 계획 시 동적인 공간(예, 발효과학관)을 1층에, 정적인 공간(작은 도서관)을 2층에 배치 가능한지? ○ 야영장 시설에서는 샤워실 (남, 여) 출입공간에 전실이 필요함 ○ 행정복지센터와 야영데크의 동선과 기능이 상이하므로 분리할 수 있는 계획 필요 	
심의결과	[●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삼척시(건축과)	심의일자	2023. 12. 13. ~ 2023. 12. 19.
건축종별	[●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삼척시(관광정책과)		

대지현황	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		
	지번 52-1	관련지번 외 3필지	
	대지면적 4,65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계획관리지역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700㎡	건폐율 15.1%	층수 2층
	주용도 문화및집회시설 (전시관)	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용적률 30.7%	연면적 합계 1,430㎡

구 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 (계획)분야	<p>○ 전반적으로 공모 규모에 비해 설계지침서가 부실해 보입니다.</p> <p>○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의 조치 사항의 경우 반영이라 했지만 반영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. 검토 의견을 반영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.</p> <p><사전검토 의견서의 조치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1 공용공간 적정면적비를 35%로 권고하여 설계지침서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. - p2 재검토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. 권장 주차대수를 설계지침서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. - p4 설계지침서의 해당 페이지에는 내용이 없으며, 설계지침서 p16~2절> 계획의 주안점에도 해당 조치 내용이 없습니다. <p>○ 설계지침서 p16 배치 및 동선계획 > 9) 개치 및 동선계획 ⇒ 오타 수정</p>

심의결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●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------	---